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0일, 김한규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 축조심사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1. 2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6.2.4.)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한규의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

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 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